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64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6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연희(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훈

판결선고 2021. 4. 9.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26. 12: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D 가계정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어 때?? 3.7센치면 큰거지, 좋아죽겠지?', '크자나 $\rightarrow$ 크 너가 딱 좋아할 크기지', '넌 박아주 1

면 좋아죽어', '년후다자나 걸레년아, 내꺼 잘 감상해라, 존나 크니까키, '지금 내가 박 아주면 좋겠지? 걸레년', 언제 크다고 할 거야? 감상중이라 대답안하는거야? 역시 걸레 년이네'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9.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8.23: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가계정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어떠냐고, 존나 커?', '이거 크냐고크 너무커서 감상중이야?'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D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과 글의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성적불쾌 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파사 박영수